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³⁰⁹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경된 정부조직 부처명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안 제5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나. ‘지방보조금의 집행’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84, FAX: 3425-1719, E-mail : pine790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방보조금의 집행)

-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이하 “체크카드” 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③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u>행정자치부</u>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p>	<p>제5조(시·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③----- ----- -----<u>행정안전부</u>----- ----.</p>
<p><신 설></p>	<p>제20조의2(지방보조금의 집행) ①지방보조사업자는 <u>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u> ②지방보조금은 <u>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내용을 대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른다.</p>	<p>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 ② ----- ----- <u>행정안전부장관</u> ----- -----.</p>